

◇◇ 학교 학생간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5가단 000000	사건유형	손해배상
원고	000 외 1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3
판결선고일	2016. 4. 6.	비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고 000과 피고 000은 △△년△월 수업시작 무렵 우발적 사유로 교실에서 말다툼과 함께 피고가 먼저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함. - 더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원고는 분이 풀리지 않았고 △△년△월 체육시간에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수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그대로 참아냄. -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손바닥의 외상성 파열,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,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음을 주장하며 소제기. 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 		
청구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000에게 15,551,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2. 9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원고 000에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12. 9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린 후 교사의 부재중에 우발적 싸움이 있어났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학교가 통상적인 수준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싸움을 미연에 예방·차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. -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호조치를 ◇◇학교가 긴급하게 발동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으며, 사후조치에 있어 교사가 교육적 관점에서 내린 판단은 존중할 필요성이 있고, 피해학생에게 전문상담사를 통한 회복적 생활지도를 하였음. 		

- 상해진단서 등은 사후에 발생한 것이며, 작성주체와 청구자가 동일하므로 재산상 손해는 없음.
- 원고 ○○○은 학교생활과정에서 분노의 조절이나 원만한 교우관계의 정립에 어려움이 있고 마찰이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는 바,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원고들 자신에게 내재된 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함.